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 운영규정

제정	2011.10.24.	규정 제24호
개정	2013.04.23.	규정 제64호
개정	2015.03.25.	규정 제120호
개정	2016.05.10.	규정 제149호
개정	2016.05.25.	규정 제152호
개정	2016.12.28.	규정 제163호
개정	2017.06.07.	규정 제169호
개정	2018.01.12.	규정 제186호
개정	2021.02.23.	규정 제290호
개정	2021.06.25.	규정 제298호
개정	2021.10.27.	규정 제305호
개정	2022.12.06.	규정 제337호
개정	2022.12.06.	규정 제337호
개정	2023.12.06.	규정 제337호
개정	2024.01.12.	규정 제36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25.> <개정 2016.05.10.>

1. “항만시설”이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사가 관할하는 구역 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2.23>
2. “여수항·광양항”이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여수항과 광양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2.23>
3.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 및 「선박법」 제1조의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06.25.>
5. “부두”란 「항만법」 제2조제5호 가목(4)에 따른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2.23>
6. “선석”이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해면으로서 계류시설로부터 해당 선박이 점유하는 일정 해면을 말한다.
7.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9. “계류장”이란 수역시설 중 선박들이 집단 계류하는 해면을 말한다.

10. “소형선 부두”이란 계류시설 중 주로 소형선박 및 부선이 계류하는 간이 부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2.23>
11.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2. “계선장”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3. “장치장”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등 보관 시설을 말하며, 보세운송 등 운송대기 화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14. “화물처리장(에이프런)”이란 화물의 통과 또는 하역처리에 이용되는 화물조작장으로서 선석에 인접한 곳을 말한다.
15.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화물을 말한다.
16. “부두운영회사”란(이하 “운영회사”라 한다) 공사와 부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17. “전용부두”란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아 사실상 전용사용하고 있는 부두 및 항만시설사용(수역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설 접안시설 또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개정 2021.10.27>
18. “임대시설”이란 제16호의 운영회사가 임대 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공용시설”이란 항만시설 중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정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0. “Port-MIS”란 (무역항의 선박입항, 항만시설사용, 관제사항, 화물반출입, 사용료 부과·징수, 선박출항 등 항만운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10.27>
21. “DWT”란 재화중량톤수로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22. “GT”란 국제총톤수로서 ‘상갑판 하부 및 상부의 모든 폐위장소의 용적’에서 ‘규정상 제외가 가능한 곳의 용적’을 차감한 전체 용적을 말한다. <신설 2021.10.27.>
23.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교대 또는 선박결합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신설 2024.01.12.>
24. “통과선박 전용 정박지”란 통과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정박지를 말한다. <신설 2024.01.12.>
25. “대체 정박지”란 지정·고시된 통과선박 정박지가 아닌 선박의 편의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박지를 말한다. <신설 2024.01.12.>

제3조(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 1 부터 별표 2까지와 같다. <개정 2015.03.25.>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중 야적장 위치는 별지 1부터 별지2까지와 같다. <개정 2021.10.27.>

③ 통과선박의 전용 정박지는 별표1의 항계 밖 정박지 W구역 및 D-2정박지로 한다. 단, 기상 악화 시 또는 항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정박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01.12.>

④ 제3항 규정에 따른 별표1의 항계 밖 정박지는 여수항 및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공동 사용할 수 있으며 입항 시 사용하는 경우는 입항하고자 하는 항에, 출항 시는 출항한 항에서 각각 입항 또는 출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1.12.>

제4조(항만시설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선박 및 화물유통촉진 등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박의 입·출항

제5조(선박의 관련정보 제공 등) ① 선박이 입항하고자 할 때와 선석과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입항예정 24시간 전 또는 사용예정 전에 선박관련정보와 선박보안정보 및 당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관련정보와 선박보안정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내항선출입신고서와 외항선 출입신고서로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6.05.10.>

제6조(선박입출항 등 관제보고) 선박이 개항의 항계 내에 입출항을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본선 선장(도선사 탑승 선박은 도선사)은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개정 2018.01.12.> <개정 2021.10.27>

1. 선박이 접안시설에 접안하기 위해 계선주에 첫 계선줄을 묶기 시작한 시각과 접안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해 마지막 계선줄을 풀어낸 시각(분 단위까지)
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이 해저에 닿기 시작한 시각과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이 해저를 벗어난 시각(분 단위까지)

제7조(선석운영회의) ① 선석 및 정박지의 효율적 운영과 지정에 공정을 기하고 기타 항만 정보교환을 위하여 선석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는 선석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는 선사, 선박대리점, 부두운영회사, 하역회사, 화주, 공사, 기타 이해관계자로 자동 구성되고 참석자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해당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25.>

③ 선석운영회의는 평일 15:00에 선석운영회의장에서 개최(필요시 시간 변경, 추가 개최) 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는 해운항만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윤번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④ 제3항의 선석운영회의에는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의 시설능력, 사용기간, 선박입출항 순서, 야간 또는 공휴일 하역작업, 장치장 이용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하여 선석 및 정박지 지정, 야적장 사용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5.03.25.>

⑤ 임대시설의 선석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때와 기타 선석과 정박지의 지정에 합의하지 못한 때는 당일 항만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장은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⑥ 제5조에 따라 선박관련정보 등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와 임대시설 및 공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선석 및 정박지 등의 항만시설 배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개정 2015.03.25.>

⑦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선석 및 정박지의 우선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 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및 정박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1. 군수물자, 정부조달 물자 등 국가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2.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3. 기타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선박

제9조(전용부두 사용) ① 전용부두는 시설물 전용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선석운영회의 때 별도의 선석지정 결정 등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용사용자는 필요한 사항의 보고 등에 대하여 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장은 전용부두에 대한 선석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제10조(선석 사용의 조정 등) ① 운영회사는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임대시설에 배정된 선박의 접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25.>

② 제1항에 따라 접안된 선박이 해당 운영회사와 하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일 경우에도 해당 운영회사는 선박의 접안과 다른 하역회사의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임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른 하역회사, 화주,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③ 사장은 선석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만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선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미 승낙 받은 사항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승낙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사용승낙 받은 사항의 변경을 요청받은 자는 선박의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선석 등 지정현황 공개) 제7조에 따라 선석 및 정박지의 결정사항은 선석운영회의실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5.03.25.> <개정 2021.10.27>

제12조(선박의 계류 및 접안능력 기준) ① 선사 또는 대리점, 하역회사는 지정된 선석 또는 정박지에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줄잡이업체 및 예선, 관계기관의 수속·하역 준비·에이프런 정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항만운영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② 사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두접안능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부두운영자는 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장이 접안능력 초과 선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접안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6.05.10.>

제13조(항만구역내의 선박입출항) ① 여수항·광양항 항계 내에 입항하여 항행하는 선박 중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표1]의 1.가.(2).(나)의 기타선박에 대하여는 이동으로 간주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별도의 입출항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5.10.>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에 따라, 여수·광양항을 항행하는 선박은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7>

제3장 하역·화물의 장치

제14조(하역작업) ① 하역회사 및 화주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 하여야 하며, 소독 등을 이유로 하역작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소유자(대리점 포함)는 하역작업이 종료되어 제반 출항 준비가 완료된 후 즉시 선박을 이안 또는 출항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이안 또는 출항하지 못하는 때에는 Port-MIS에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12.>

③ 항만 밖으로 반출된 화물을 항만 안으로 재 반입코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ort-MIS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재반입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12.>

④ 하역회사 및 화주는 하역 중 지나친 소음이나 분진 등 공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선박으로부터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부두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중량화물 등 설계 상재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하역할 경우에는 에이프런 구역에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 상재하중 미만의 화물일 경우에도 포장면 손상 등 시설물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하역 전에 반드시 고무제품이나 목재 등의 깔판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이행한 후 하역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2.>

제15조(하역작업 중지) ① 사장은 하역회사 또는 화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하역작업으로 인한 비산분진과 항만오염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하역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하역회사 또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 요청을 받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하고, 그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사장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장치장사용 우선순위) 화물의 장치는 항만시설 사용 신청 순위에 따라 장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5.03.25.>

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등 정부정책물자
2. 수출입 물자
3. 관수물자
4.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물자

제17조(화물의 장치)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선박이 접안하여 이 안할 때까지 그 선박에 양·적하할 화물의 설계 상재하중 한도 내 임시장치를 제외하고는 에이프런 상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개정 2015.03.25.> <개정 2018.01.12.>

② 화물은 질서 있게 B/L(선하증권) 단위로 구분 장치하고, 중량품.경량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품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③ 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다단적 적치과정에서 하중이 증가하여 설계 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단적 하여야 하며, 시설보호를 위해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1.12.>

④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⑤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교통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⑥ 야적화물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복포를 덮는 등)를 하여 화물의 유실 및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25.>

제18조(장치화물의 관리) ① 제17조에 따라 장치하는 해당 화물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의 규격과 내용을 포함한 별표 5의 화물인식표를 도로 또는 교통로를 향하여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반출되는 화물과 화물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25.> <개정 2016.05.10.>

1. 규격 : 가로 40cm 세로 30cm

2. 기재사항 : 품목, 수량, 종류(수출, 수입, 연안), 화주명, 하역회사, 반입년월일, 반출예정년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장치하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관리인을 지정하고 그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제19조(화물장치의 제한) ① 폭발성.인화성.독성.부식성.방사성 위험물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코드(IMDG CODE) 1.3이하 폭발물 및 방사능 물질을 제외한 컨테이너 내장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취급통제는 화물의 성질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검사를 득하여 지정된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별표 6의 부두별 설계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장치장 운영효율과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개정 2016.05.10.> <개정 2018.01.12.>

제20조(장치화물의 반출 등) ① 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화물을 장치함으로써 화물 유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역회사 또는 화주에게 이적 또는 반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이적 또는 반출을 요청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03.25.>

제21조(화물의 경비) 하역중이거나 장치장에 야적된 화물과 각종 하역 장비의 경비는 해당 하역회사·화주 또는 소유자가 전담하여야 하며, 도난·유실·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제4장 항만시설의 관리

제22조(항만시설의 경비) 항만시설의 경비는 각 부두별로 배치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등이 담당한다. 단, 전용부두와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주 또는 전용사용자가 경비근무자를 배치 운영한다.

제23조(시설유지관리 및 보수) 임대시설 및 전용시설은 부두운영회사 및 전용사용자가 관리·보수·환경개선 등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시설의 유지보수 책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2.28.>

제24조(사용자의 확인의무) ①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 훼손여부에 관하여 사장의 입회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2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항만시설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시설사용자가 원상회복 등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25.>

제25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①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사용승낙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후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25.>

② 제1항의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제26조(항만의 청결유지)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항만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항만청소는 구역별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하역회사는 항만청소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1.12.>

③ 제2항에 따라 하역회사는 타인에게 항만청소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은 항만의 청결 유지와 원활한 항만운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역회사 또는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제27조(항내 안전조치) ① 위험화물 취급에 따른 부두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장은 부두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부두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풍수해 재난에 따른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하역회사·화주는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자연재난)」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개정 2018.01.12.>

1. 수리중이거나 운항불가 선박의 복구완료, 선원 귀선 등 선박대피 준비 완료
2. 야적화물·하역장비 등의 고박,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완료

③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하역회사·화주는 공사의 안전관련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선박의 이동요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장은 선박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1. 풍수해 재난 등이 예상되어 항만시설 보호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고장, 하역작업 부진 등으로 항만시설 사용승낙 기간 내에 출항할 수 없어 타 선박 접안 등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항만시설 사용승낙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29조(항만 내 공해 및 오염방지) 선사·해운대리점·하역회사·화주 등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는 환경보전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비산분진, 소음, 악취 등 공해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 등이 발생될 때에는 책임지고 전담 해결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1. 항만시설을 훼손·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항만시설을 청결히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차량으로부터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4.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에이프런,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차량 및 장비는 부두 안 에이프런에서는 10km/h, 통로에서는 3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항만배후부지 내에서도 안전을 위해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12.>

6. 안전사고 및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7. 항만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문.검색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하역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 이용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취소.정지등) ① 사장은 항만시설을 사용 중인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지시를 먼저 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배제 또는 제한(항내 출입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개정 2021.06.25.>

1. 항만시설의 무단사용, 위험물방치 등 항내질서 문란 및 안전상에 위험이 있을 경우 <개정 2018.01.12.>
2. 사용기간이 종료 또는 취소된 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3개월 이상 장기간 체화하여 정상적인 화물유통을 저해한 경우
5. 항내에서 폐기물 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6.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7. 항내 무단 출입·이탈 등 항내 보안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신설 2018.01.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낙 배제 및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06.25.>

부 칙 (2011.10.24. 규정 제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정 전에 이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04.23. 규정 제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25. 규정 제1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10. 규정 제1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25. 규정 제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8. 규정 제1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6.07. 규정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12. 규정 제1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23. 규정 제2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25. 규정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7. 규정 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06. 규정 제3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12. 규정 제3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2024.1.16.)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04.23.> <개정 2015.03.25.> <개정 2016.05.10.> <개정 2018.01.12.>
 <개정 2018.02.23.> <개정 2021.10.27.> <개정 2022.12.06.> <개정 2024.01.12.>

기 본 시 설

1. 정박지

명 칭	위 치	선박수용 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 고
1 정박지	N 34° 45 ' 27 " , E 127° 45 ' 42 "	1,000	WAY-01	
2 정박지	N 34° 45 ' 33 " , E 127° 45 ' 20 "	5,000	WAY-02	

○ 광양항

명 칭	위 치	선박수용 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 고
1 정박지	N 34° 51 ' 54 " , E 127° 47 ' 43 "	50,000	WAK-01	공동지역
2 정박지	N 34° 52 ' 21 " , E 127° 47 ' 04 "	20,000	WAK-02	
3 정박지	N 34° 52 ' 31 " , E 127° 47 ' 39 "	5,000	WAK-03	
4 정박지	N 34° 52 ' 37 " , E 127° 47 ' 14 "	5,000	WAK-04	
5 정박지	N 34° 52 ' 14 " , E 127° 47 ' 51 "	20,000	WAK-05	
6 정박지	N 34° 53 ' 23 " , E 127° 48 ' 08 "	10,000	WAK-06	
7 정박지	N 34° 52 ' 06 " , E 127° 44 ' 27 "	1,000	WAK-07	여천지역 ※위험물 운송선박 전용정박지
8 정박지	N 34° 52 ' 05 " , E 127° 44 ' 16 "	1,000	WAK-08	
9 정박지	N 34° 52 ' 03 " , E 127° 44 ' 04 "	1,000	WAK-09	
10정박지	N 34° 52 ' 07 " , E 127° 42 ' 11 "	3,000	WAK-10	
11정박지	N 34° 52 ' 07 " , E 127° 41 ' 56 "	3,000	WAK-11	
12정박지	N 34° 54 ' 10 " , E 127° 41 ' 52 " N 34° 53 ' 58 " , E 127° 41 ' 30 " N 34° 53 ' 38 " , E 127° 41 ' 48 " N 34° 53 ' 53 " , E 127° 42 ' 11 " 를 연결한 선 내측	50,000	WAK-12	광양지역
13정박지	N 34° 53 ' 58 " , E 127° 41 ' 30 " N 34° 53 ' 34 " , E 127° 40 ' 39 " N 34° 53 ' 15 " , E 127° 41 ' 11 " N 34° 53 ' 38 " , E 127° 41 ' 48 " 를 연결한 선 내측	5,000	WAK-13	

○ 항계 밖 정박지

명 칭	위 치	선박 수용능력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고
A 구 역	N 34° 46 ' 59 " , E 127° 45 ' 42 " N 34° 46 ' 59 " , E 127° 46 ' 48 " N 34° 45 ' 31 " , E 127° 46 ' 14 " N 34° 45 ' 43 " , E 127° 45 ' 24 "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8m 이하 선박	WAA-01	
B 구 역	N 34° 46 ' 59 " , E 127° 46 ' 48 " N 34° 46 ' 59 " , E 127° 47 ' 41 " N 34° 45 ' 31 " , E 127° 48 ' 04 " N 34° 45 ' 31 " , E 127° 46 ' 14 "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11m 이하 선박	WAA-02	
C 구 역	N 34° 45 ' 25 " , E 127° 46 ' 18 " N 34° 45 ' 25 " , E 127° 47 ' 22 " N 34° 45 ' 11 " , E 127° 48 ' 08 " N 34° 44 ' 36 " , E 127° 48 ' 27 " N 34° 44 ' 36 " , E 127° 46 ' 57 "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13m 이하 선박	WAA-03	
W 구 역	N 34° 44 ' 36 " , E 127° 46 ' 57 " N 34° 44 ' 36 " , E 127° 48 ' 27 " N 34° 42 ' 41 " , E 127° 49 ' 16 " N 34° 42 ' 41 " , E 127° 48 ' 04 "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14.5m 이하 선박	WAA-04	검역·대기 전용정박지 (단 급유선박은 G/T 5천미만)
D-1 정박지	N 34° 39 ' 32 " , E 127° 57 ' 05 " N 34° 39 ' 32 " , E 127° 59 ' 36 " N 34° 35 ' 41 " , E 127° 59 ' 49 " N 34° 35 ' 41 " , E 127° 58 ' 02 "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16m 이상 선박	WAD-01	제2검역 정박지를 포함
D-2 정박지	N 34° 40 ' 11 " , E 127° 53 ' 52 " (반경 700m)	흘수 16m 미만 선박	WAD-02	
제1검역 정박지	N 34° 44 ' 36 " , E 127° 46 ' 57 " N 34° 44 ' 36 " , E 127° 48 ' 27 " N 34° 42 ' 41 " , E 127° 49 ' 16 " N 34° 42 ' 41 " , E 127° 48 ' 04 "	흘수 14.5m 이하 선박	WAC-01	W구역과 동일
제2검역 정박지	N 34° 39 ' 11 " , E 127° 57 ' 52 " (반경 1,000m)	흘수 14.5m 초과 선박	WAC-02	D-1구역에 포함

2. 선석(Berth)

○ 여수항

부두별	선석별	길이(M)	최저수심(M)	이용선박규모(DW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고
크루즈부두	1	500	11.0	150,000GT	MB4-01	
여수신항여객부두	1	292	7.1	15,000GT	MB4-02	구국제여객부두
엑스포소형선부두	1~2	160	5.0~6.7		MB4-03,04	부잔교 구연안여객부두
여수신항 제1부두	1~3	287	1.7~6.5		MB5-01, 02,03	구) 2부두 선박전시부두
여수신항 제2부두	1	227	6.6	4,000GT	MB5-04	구) 3부두 선박전시부두
여수신항 제3부두	1	248	6.7	30,000GT	MB6-02	구해상호텔부두
여수신항 해경부두	1	150	7.2		MB6-03	구해경전용부두
오동도소형선부두	1	239	3.0		MBK-01	부잔교
신북항 관리부두	1	280	3.5	50GT 미만	MB8-01	
	2	500	7.5	200GT 이상	MB8-02	
종화동소형선부두	-	214			MWJ-01	
남산동소형선부두	-	123			MWS-01	
여수연안여객부두	1	137			MFP-01	구여객부두(구항)
우두리소형선부두	-	600	4.0		MWU-01	
중앙동소형선부두	-	285.6	4.5~6.5		MWJ-02	
경사식소형선부두	-	29	2.5		MWK-01	

○ 광양항(여수)

부두별	선석별	길이(M)	최저수심(M)	이용선박규모(DW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고
사포1부두	1	319	15.7	100,000	MBS-01	
사포2부두	1	285	16.5	100,000	MBS-02	
낙포부두	1	120	6.7	3,000	MBN-01	
	2	200	9.4	20,000	MBN-02	
	3	220	9.4	30,000	MBN-03	
	4	270	14	50,000	MBN-04	
	5	240	12.6	50,000	MBN-05	
중흥부두	1-3	300	6.6	3,000	MBJ-01,02,03	
	4	130	8.5	5,000	MBJ-04	
	5	130	8	5,000	MBJ-05	
제2중흥부두	1	130	6.5	5,000	MBV-01	최저수심에 맞추어 운영
	2	130	7.5	5,000	MBV-02	

부두별	선석별	길이(M)	최저수심 (M)	이용선박규모 (DW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고
석유화학부두	1-2	330	9.0	10,000	MBU-01,02	
제2석유화학부두	1-2	370	9.0	10,000	MBU-03,04	
LPG부두	1	352	11.2	65,200	MBL-01	
석탄부두	1	185	7.4	15,000	MBM-01	
GS칼텍스 제1제품부두	1	125	11.6	7,000	MBF-01	
	2		6.8	2,000	MBF-02	
	3	305.5	13	35,000	MBF-03	
	4		5.6	5,000	MBF-04	
	5	216.5	12.1	50,000	MBF-05	
	6		7	5,000	MBF-06	
	7	170	11.6	12,000	MBF-07	
	8	30	6.3	750	MBF-08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1	184	9	10,000	MBG-01	
	2	215	10	15,000	MBG-02	
	3	215	10	15,000	MBG-03	
원유부두	1	405	21.5	255,000	MBW-01	
	2	481	23.5	320,000	MBW-02	
	3	310	22	120,000	MBW-03	
코스모스부두	1	123	6.6	5,000	MBC-01	
E1가스부두	1	120	5.1	3,800	MBE-01	
LG VCM부두	1	280	6.6	5,000	MBR-01	
삼남부두	1	163	7.5	6,000	MBP-01	
U-1입출하부두	1	480	23.5	300,000	MBO-01	
여수화력석탄부두	1	196	8.5	10,000	MBY-01	
낙포석탄부두	1	300	15	70,000	MBB-01	
	2	120	12	10,000	MBB-02	
OKYC부두	1	340	17	80,000	MBK-01	
	2	380	18	120,000	MBK-02	
	3	440	19.5	200,000	MBK-03	
	4	200	12	30,000	MBK-04	만재흘수10.4m 이 상선박 접안 금지
여천일반부두	1	300	15	70,000	MBX-01	최대 7만톤급 접 안 가능
	2	120	11.8~15	5,000	MBX-02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1	290	15.5	80,000	MBN-31	
LG화학제품부두	1	196	9.6	9,000	MDA-01	
	2	196	9.6	9,000	MDA-02	
낙포관용선부두	1	160	3	-	MWB-01	
낙포소형선부두	-	100	3.7	-	MWN-01	
코스모스 소형선부두	-	90	0.2	-	MWC-01	
낙포관공선부두	1	515	1.5~4.5	300	MWG-01	
한구미소형선부두	-	100	-	-	MWH-01	
소형유조선부두	1	168	3.5~5.0	최대 496GT	MBQ-01	
단지포소형선부두	-	100	4.5	-	MWI-01	
월내소형선부두	-	70(안벽식)	3.49	-	MWE-01	
		38(경사식)				

○ 광양항(광양)

부 두 별	선석별	길이(M)	최저수심 (M)	이용선박규모 (DW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 고
CTS반출부두	1	262.5	11.8	30,000	MB1-01	
원료부두	1	260	15	30,000	MB2-01	원료1기
	2	370	21.5	200,000	MB2-02	
	3	400	23	350,000	MB2-03	
	4	400	22.5	250,000	MB2-04	원료2기
	5	370	18	200,000	MB2-05	원료3기
	6	370	19.5	200,000	MB2-06	
	7	300	15.5	70,000	MB2-07	
RO-RO부두	1	140	14	8,000	MB3-01	돌핀식
	2	240	12	30,000	MB3-02	
제 품 부 두	1	280	14	50,000	MB4-01	제품4기
	2	240	12	30,000	MB4-02	제품1기
	3	240	12	30,000	MB4-03	
	4	240	12	30,000	MB4-04	
	5	240	11	20,000	MB4-05	제품2기
	6	126.6	7	5,000	MB4-06	제품3기
	7	126.6	7	5,000	MB4-07	
	8	126.6	7	5,000	MB4-08	
	9	126.6	7	5,000	MB4-09	
	10	126.6	7	5,000	MB4-0A	
	11	107	7	3,500	MB4-0B	
고철부두	1	270	14	50,000	MB5-01	
후판로로부두	1	120	-	9,000	MBA-01	
관리부두	1	103	5	3,000	MB6-01	
시멘트부두	1	160	9	10,000	MBT-01	
	2	160	9	10,000	MBT-02	
	3	160	9	10,000	MBT-03	
	4	160	9	10,000	MBT-04	
	5	160	9	10,000	MBT-05	
	6	130	9	5,000	MBT-06	
LNG부두	1	420	14	87,900	MB8-01	

부 두 별		선석별	길이(M)	최저수심(M)	이용선박규모(DW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고
하포 일반부두		1	350	14	50,000	MB7-01	
		2	350	15	50,000	MB7-02	
		3	350	15	50,000	MB7-03	
해양산업 클러스터부두		4	350	15	50,000	MB7-04	
자동차부두		5	350	15	50,000	MB7-05	
		6	350	15	50,000	MB7-06	
		7	200	15	20,000	MB7-07	
		8	250	12	20,000	MB7-08	
컨 테 이 너 부 두	2단계 2차	9	250	12	20,000	MB7-09	2,000TEU 이상
		10	200	16	20,000	MB7-0A	
		11	350	16	50,000	MB7-0B	4,000TEU 이상
		12	350	16	50,000	MB7-0C	
	3단계 1차	13	350	16	50,000	MB7-0D	
		14	350	16	50,000	MB7-0E	
		15	350	16	50,000	MB7-0F	
		16	350	16	50,000	MB7-0G	
3단계 2차		17	350	16	50,000	MB7-0H	
		18	350	16	50,000	MB7-0I	
		19	350	16	50,000	MB7-0J	
		20	250	16	20,000	MB7-0K	2,000TEU 이상
중마일반부두		1	210	11	20,000	MB9-01	
		2	210	11	20,000	MB9-02	
컨테이너 관용선 부두		1	250	6	2,000	MW2-01	
		2	300	6	2,000	MW2-02	
중마관용선부두		1	100	5	1,000	MW3-01	
태인부두		1	130	7.5	5,000	MW1-01	
현대하이스코부두		1	170	12	12,000	MBH-01	
울촌일반부두		1	210	11	20,000	MBI-01	
울 촌 소형선부두		－	40	－	－	MWO-01	
한라MS전용부두		1	502	7	－	MWR-01	
현대스틸전용부두		1	160	6.3	2,800	MWY-01	
삼우중공업전용부두		1	355	6	2,500	MWY-02	

3. 항로(광양항)

항로별	항로구역	특정조건
제1항로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4° 50 ' 36 ", E 127° 47 ' 37 " 2. N 34° 51 ' 48 ", E 127° 46 ' 37 " 3. N 34° 52 ' 08 ", E 127° 46 ' 03 " 4. N 34° 51 ' 55 ", E 127° 47 ' 09 " 5. N 34° 51 ' 34 ", E 127° 47 ' 35 " 6. N 34° 51 ' 16 ", E 127° 48 ' 05 " 7. N 34° 50 ' 47 ", E 127° 48 ' 08 "	
제2항로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4° 51 ' 55 ", E 127° 46 ' 24 " 2. N 34° 51 ' 55 ", E 127° 45 ' 11 " 3. N 34° 52 ' 08 ", E 127° 45 ' 11 " 4. N 34° 52 ' 08 ", E 127° 46 ' 03 "	
제3항로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4° 52 ' 08 ", E 127° 46 ' 03 " 2. N 34° 52 ' 34 ", E 127° 45 ' 19 " 3. N 34° 53 ' 25 ", E 127° 44 ' 58 " 4. N 34° 53 ' 17 ", E 127° 45 ' 24 " 5. N 34° 52 ' 49 ", E 127° 45 ' 33 " 6. N 34° 52 ' 25 ", E 127° 46 ' 00 " 7. N 34° 52 ' 04 ", E 127° 46 ' 38 "	
제4항로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4° 52 ' 04 ", E 127° 46 ' 38 " 2. N 34° 53 ' 17 ", E 127° 45 ' 24 " 3. N 34° 53 ' 27 ", E 127° 45 ' 36 " 4. N 34° 51 ' 55 ", E 127° 47 ' 09 "	
시멘트부두 진입항로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4° 54 ' 23.340 ", E 127° 48 ' 13.070 " 2. N 34° 55 ' 55.660 ", E 127° 46 ' 22.690 " 3. N 34° 55 ' 58.840 ", E 127° 46 ' 12.500 " 4. N 34° 56 ' 15.420 ", E 127° 46 ' 17.090 " 5. N 34° 55 ' 55.320 ", E 127° 46 ' 28.630 " 4. N 34° 54 ' 26.540 ", E 127° 48 ' 14.770 "	

주요기능시설

1. 상옥

항 별	부 두 별	면 적 (㎡)	수용능력(톤)
광 양 항	제 품부두(2동)	6,930	6,000
	하포일반부두(2동)	14,850	-

2. 야적장

항 별	부 두 별	면 적(㎡)
광양항(여수)	사포 1부두	7,872
	사포 2부두	7,589
	여천일반부두	43,834
	제2중흥부두	15,392
광양항(광양)	제 품 부 두	166,701
	관 리 부 두	36,997
	고 철 부 두	32,494
	RO-RO부두	31,620.7
	하포일반부두	500,000
	컨테이너부두	1,109,000
	중마일반부두	63,000
	태 인 부 두	7,150
	울촌소형선부두	2,400
	울촌일반부두	23,780

【별표 3】 <개정 2013.04.23.> <개정 2015.03.25.> <개정 2018.01.12.> <개정 2021.10.27.>
<개정 2024.01.12.>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항 별	부 두 별	선석	이용선박	주요취급화물
여수항 (구항)	중앙동소형선부두		역무선	
	남산동소형선부두		역무선, 어선	
	종화동소형선부두		역무선, 어선	
	우두리소형선부두		역무선, 관공선	
	여객부두(구항)		여객선	
광양항 (여수)	사포1부두	1	외 항 선	납사, 석유화학제품
	사포2부두	1	내.외항선	소금, 석유화학제품
	낙포부두	1-5	내.외항선	비료, 석고, 석유화학제품 인광석
	중흥부두	1-5	내.외항선	석유화학제품
	제2중흥부두	1-2	내.외항선	잡화, 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부두	1-2	내.외항선	석유화학제품
	제2석유화학부두	1-2	내.외항선	석유화학제품
	LPG부두	1	외 항 선	LPG
	석탄부두	1	내 항 선	유연탄
	GS칼텍스제1제품부두	1-8	내.외항선	유류
	GS칼텍스제2제품부두	1-3	내.외항선	유류, 석유화학제품
	원유부두	1-3	내.외항선	원유
	코스모스부두	1	내.외항선	LPG
	E1가스부두	1	내 항 선	LPG
	LG VCM부두	1	내.외항선	메탄올, VCM
	U-1입출하부두	1	내.외항선	원유
	삼남부두	1	"	초산, PX
	낙포석탄부두	1-2	"	유연탄, 기타광석
	OKYC부두	1-4	"	원유, 유류
	여천일반부두	1-2	"	잡화
	GS칼텍스제3제품부두	1	내.외항선	유류
	LG화학제품부두	1-2	내.외항선	석유화학제품
	여수화력석탄부두	1	내 항 선	유연탄
	낙포관용선부두	1	관공선, 역무선	-
	낙포소형선부두	1	내 항 선	잡화
	코스모스소형선부두	1	"	기자재
	낙포관공선부두	1	관공선, 역무선	-
	한구미소형선부두	1	내항선	잡화, 골재
	소형유조선부두	1	내항선, 역무선	-

항 별	부 두 별	선석	이용선박	주요취급화물
광양항 (광양)	CTS반출부두	1	내.외 항선	석탄, 슬러그
	원료부두	1	내.외 항선	석회석, 광석
		2-7	"	석회석, 광석, 석탄
	RO-RO부두	1-2	내 항 선	철제 품, 기자재
	제 품부두	1-3	내.외 항선	철제 품, 기자재
		4	"	철제 품, 시멘트, 유류
		5-11	"	철제 품, 기자재
	고철부두	1	"	철제 품, 고철
	관리부두	1	"	모래, 시멘트 원료제 품, 기자재
	시멘트부두	1-6	"	시멘트 원료제 품
	중마일반부두	1-2	"	잡화
	LNG부두	1	"	LNG
	하포일반부두	1-3	"	잡화, 철제 품
	자동차부두	5-8	"	자동차
	컨테이너부두	9-16	"	컨테이너
	자동차부두(예정)	17-20	"	컨테이너
	컨테이너 관용선부두	2	관공선, 역무선	
	중마 관용선부두	1	관공선, 역무선	
	태인부두	1	내 항선	모래, 잡화
	후판로로부두	1	"	철제 품, 기자재
	현대하이스코부두	1	내.외 항선	철제 품
	울촌일반부두	1	"	철제 품, 기타잡화
	한라IMS전용부두	1	내.외 항선	
	현대스틸전용부두	1	내.외 항선	철제 품
	삼우중공업전용부두	1	내.외 항선	철제 품
	울촌소형선부두	1	내 항선	잡화, 모래

부두 접안능력 초과 선박 접안기준

구분	부 두	선석	기존 접안능력 (DWT)	접안능력 초과 선박 접안기준	
				재 산정 접안능력(DWT)	최대화물적재량 (톤)및 선박길이
1	석유화학부두	1-2	10,000	13,000	10,000
2	원료부두	4	250,000	300,000	250,000 (길이340m, 흘수 19.5m)
3	제 품 부두	1	50,000	70,000	50,000
		2-4	30,000	55,000	30,000
4	고철부두	1	50,000	70,000	50,000
5	GS칼텍스 제1제 품부두	3	35,000	51,000	35,000
		5	50,000	55,000	50,000
		7	12,000	13,000	12,000
6	GS칼텍스 제2제 품부두	1	10,000	15,000	10,000
		2	15,000	20,000	15,000
7	U-1입출하부두	1	300,000	325,000	300,000
8	OKYC부두	3	200,000	320,000	200,000
9	낙포석탄부두	1	70,000	84,000	77,000
		2	10,000	12,000(기선) 15,000(부선)	11,000(기선) 15,000(부선)
10	사포 1부두	1	100,000	120,000	110,000
11	사포 2부두	1	100,000	120,000	110,000
12	중흥부두	1-3	3,000	3,700	접이안 안전 대책 제출
		4-5	5,000	5,500	
13	원유부두	1	255,000	개 별 검 토	255,000
		3	120,000	130,000	120,000
14	원료부두	2,5,6	200,000	250,000	200,000
15	제 품 부두	6-10	5,000	7,200	5,000

* 접안능력 초과 선박이 접안할 경우, 아래 안전확보 공통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항로폭 제한) 입항 선박의 길이가 항로폭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② (항로 수심 제한) 입출항 최대흘수가 (항로최소수심 + 조위) × 0.8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여유수심 15% 이상)
* 조위를 합산한 경우 입출항 시간대는 고조시로 제한
 - ③ (부두 수심 제한) 입출항 최대흘수가 (부두앞 수심 + 조위) × 0.9를 초과하지 않을 것(여유수심 10% 이상)
* 조위를 합산한 경우 입출항 시간대는 고조시로 제한
 - ④ (연속된 부두에 접안시) 전후방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과 자선이 최소 1B(선폭)의 거리가 있을 것
- 선수/선미 계류색이 선박의 안전한 접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각도(최소 30도)를 가질 것
 - ⑤ (단독 부두에 접안 시) 선수미 계류색이 선박의 안전한 접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각도(부두선과 최소 30도)를 가질 것
 - ⑥ 부두 진입항로, 전후면에 천수심 등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별도 협의
- ※ 원유부두(1)는 접안능력 초과 선박 접안 요청시, 흘수, 화물적재량, 선석길이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접안 가능 여부 판단

【별표 5】<2016.05.10. 별표 4를 별표 5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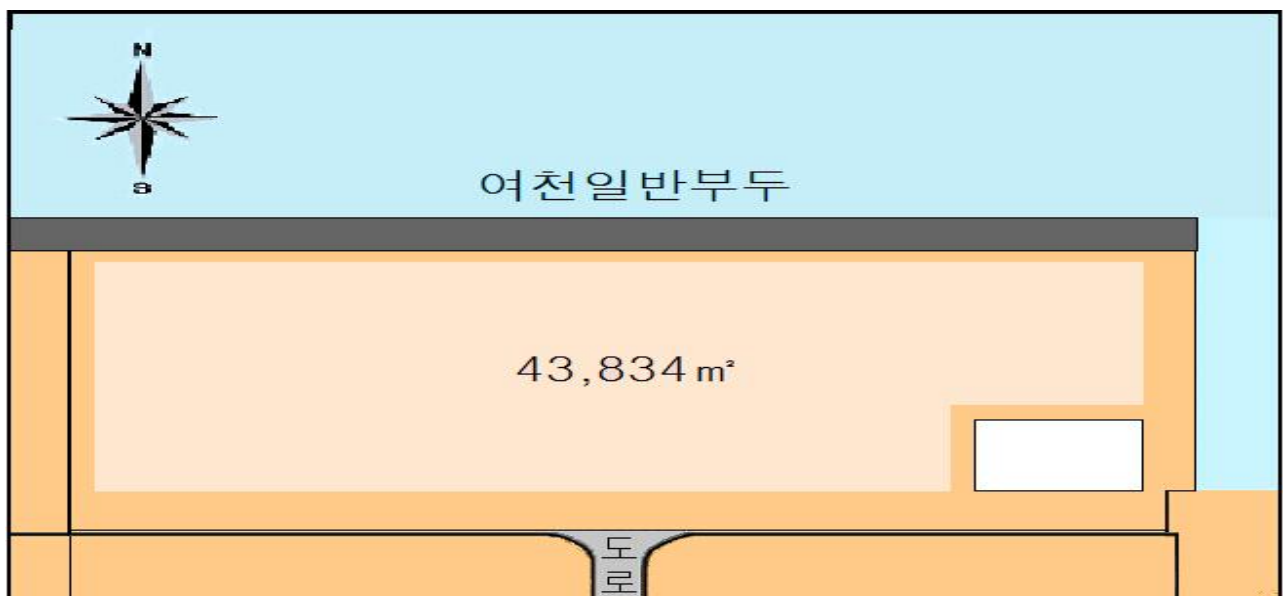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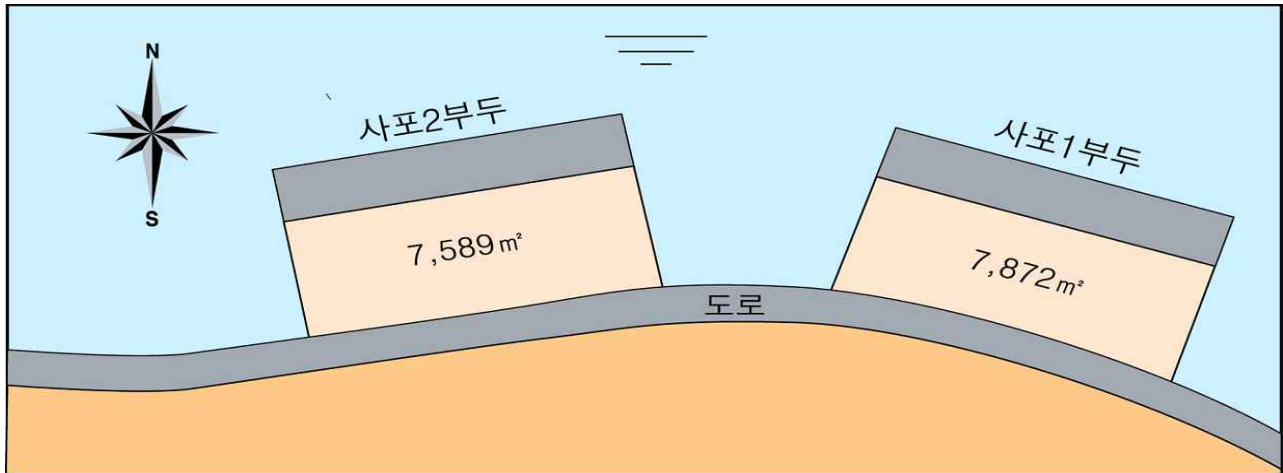
		40cm		
↓	화 물 인 식 표			
30cm	○품 명			
	○수 량			
	○종 류			
	○반입년월일			
	○화 주			
	○하역회사 (연락처)			
	○반출예정년월일			
↑	○비 고			
		↓		
		↑		
		100cm		
		↓		
		↑		
		5cm		

부 두 별 설 계 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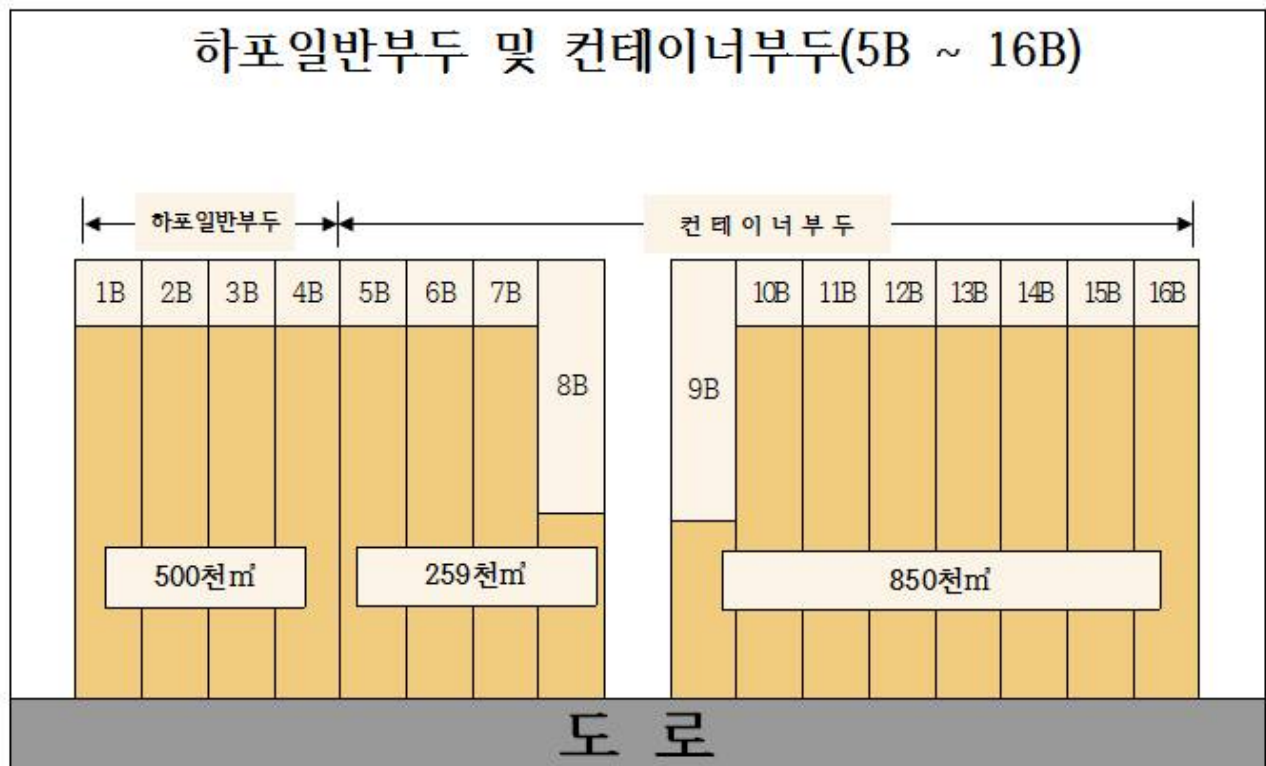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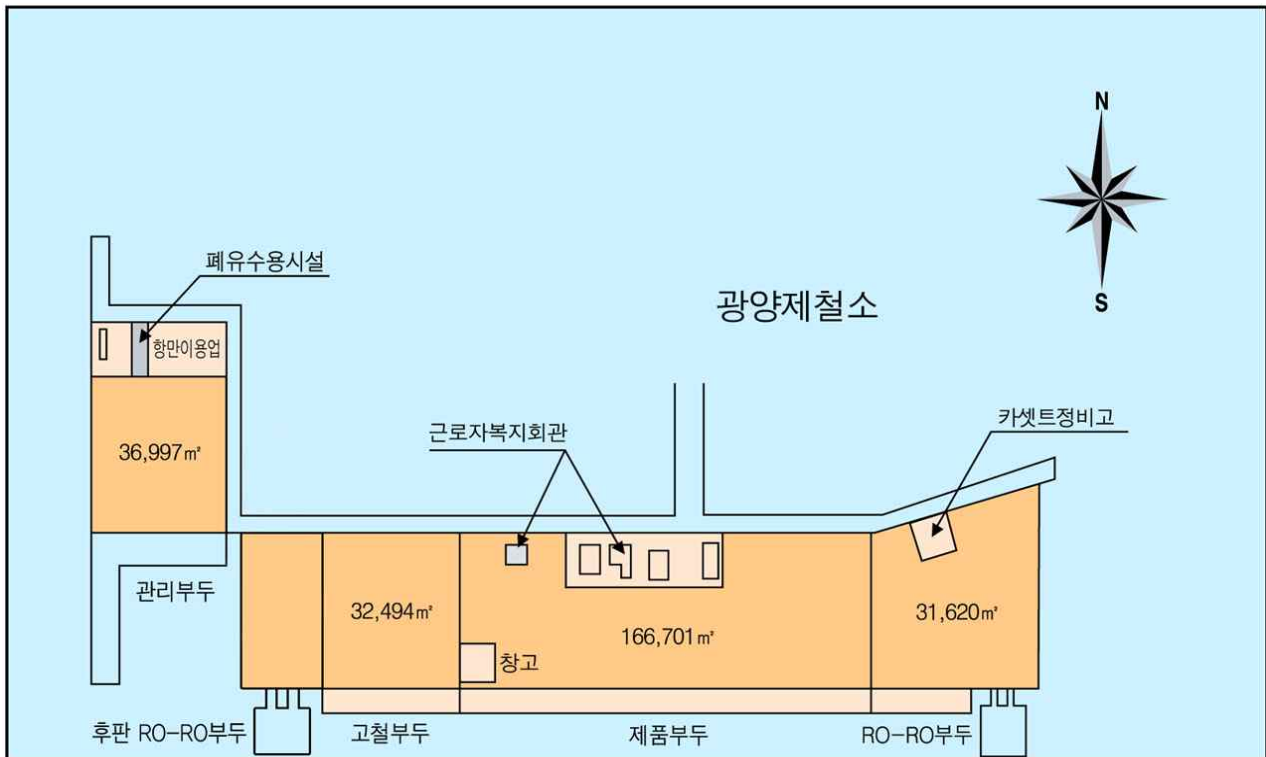
번호	시설물명	설계하중(야드) (t/m ³)	설계하중(Apron) (t/m ³)	비 고
1	하포일반부두 자동차부두(2-1단계)	5.0 (‘컨’장치장)	1.0	차량 및 TC주행로, 공‘컨’장치장은 1.5t/m ²
2	컨테이너부두(2-23-1단계) 자동화부두(3-2단계)	5.0 (‘컨’장치장)	2.0	
3	종마일반부두	2.0	2.0	
4	제품부두	4.2	6.0	
5	울촌일반부두	3.0	3.0	
6	하이스코부두	2.0	2.0	
7	석유화학부두	-	1.5	
8	제2중흥부두	3.0	1.5	
9	낙포석탄부두	3.0	3.0	
10	사포 1,2 부두	5.0	2.0	
11	항만배 후부지	1.5		

* 산적액체 취급 부두 등 일부 시설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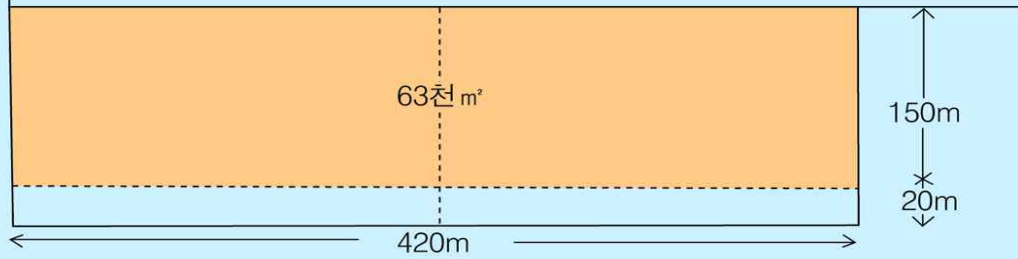
【별지1】 광양항(여수) 야적장 위치도 <별지4에서 이동 2021.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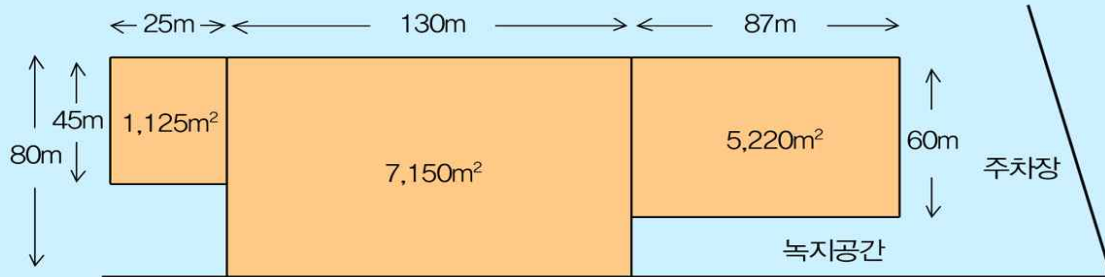
【별지2】 광양항(광양) 야적장 위치도 <개정 2018.01.12.> <별지4-1,4-2,4-3 통합 2021.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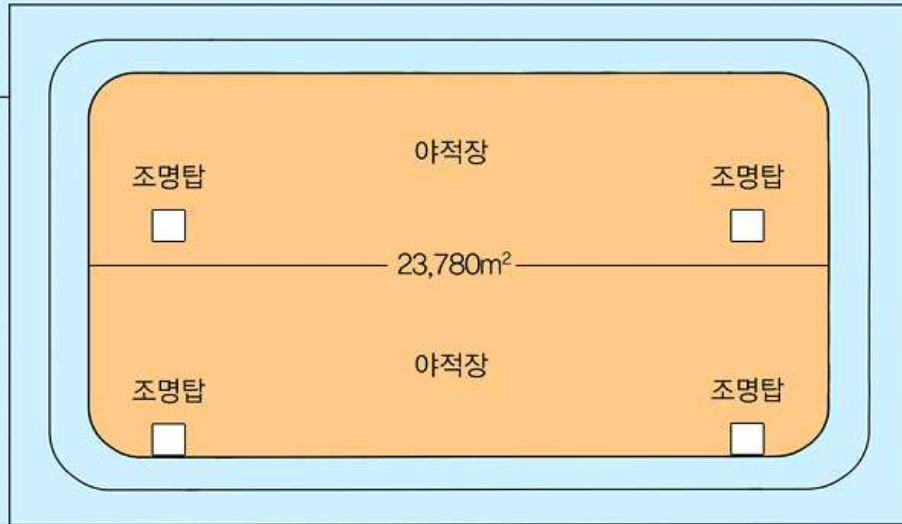
중 마 일 반 부 두



태 인 부 두



울촌일반부두



울촌물양장

